

과천시공고 제2025 - 909호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·공고합니다.

2025년 8월 25일

과천시장

1. 허가구역 대상지역

대상지역		면적(km ²)	비 고
경기도	과천시	35.87	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058호 (2025. 8. 21.)

2. 허가구역 지정기간 :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

○ 허가대상자: 외국인 등(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)

○ 허가대상 용도: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

※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

4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㎡ 초과
	상업지역	15㎡ 초과
	공업지역	15㎡ 초과
	녹지지역	20㎡ 초과
	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	6㎡ 초과
도시지역 외의 지역	농 지	50㎡ 초과
	임 야	100㎡ 초과
	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	25㎡ 초과

※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면적 10%~300% 범위 지정 가능

5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

※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